'공공기록물관리'에 대한 오늘의 과제

배 현 숙
(계명문화대학 문헌정보과 교수)

目次 :

1. 서언
2. 실록의 편찬 및 관리
2.1. 편찬
2.2. 관리
3.공공기관 기록물관리의 현황
4.오늘의 과제

1.서언

오늘날 우리 문헌정보학계는 두 가지의 커다란 문제에 봉착해 있다. 하나는 학부제의 실시로 전공교육이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사서자격증을 부여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기록물관리사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의 설치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현안이 되고 있는 두 가지 문제 다 기록물을 관리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인데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였다간 기록관리사의 위상과 대비해서 사서직의 위상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그 위상을 제고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두 직종의 관심의 대상인 기록물이란 인간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사를 두뇌 외의 물체에 담고 있는 모든 형태의 매체를 말한다. 고대에는 모든 기록물을 서기 또는 사자생이 관리하였는데 당시의 기록물은 도서 또는 문서라고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인간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기록물의 양이 많아졌고 이에 따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묶어놓은 도서와 묶어놓지 않아서 관리하기 어려운 낱장의 자료를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이에 도서관과 문서관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후 매체의 다양화로 도서관은 뭉뚱그려진 자료이면 지제도서(紙製

圖書)이건, 비도서자료이건, 전자자료이건 구분 없이 관리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이에 우리 나라에서 기록을 어떻게 관리하였는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2. 실록의 편찬 및 관리

우리의 선인들도 일찍부터 기록을 남겼고, 이를 토대로 역사를 편찬해왔다. 고로 삼국시대에는 『서기』(書紀)『신집』(新集) 『국사』(國史) 등의 역사서를 편찬하였고, 고려시대에도 『고금기』(古今錄) 『편년통제』(編年通載) 『편년통록』(編年通錄) 『천추금경록』(千秋金鏡錄) 『세대편년절요』(世代編年節要)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등등의 사서와 기록들을 남겼다. 이들 서적의 일부는 사대를 지향하는 무리들에 의해 멸실되기도 하였고, 일부는 여러 차례의 병란으로 소진되었으므로 몽골 침입 이전에 저작된 우리 나라의 서적과 기록이 전래되는 것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후에도 많은 서적이 저작되었고 이들 서적과 기록물은 크고 작은 전란, 화재, 재난을 통해 소진되기도 하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거질의 대장경과 실록은 지금까지 전래되고 있으니 큰 다행이라 하겠다. 이들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대표적인 예를 역사서적 특히 실록의 편찬, 보존, 관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1편찬

실록은 제왕의 치적을 연월일순으로 편찬한 편년체의 역사서적이다. 우리나라 실록의 기원은 고려 현종때 편찬된 『칠대사적』(七代事蹟)으로 보고 있다. 당시 거란병이 개성을 공격하고 궁궐과 서적을 소진시켰기 때문에 이의 수습을 위하여 태조로부터 목종까지 7대의 사적을 정리하게 된 것이다. 이의 후속편인 『현종실록』(顯宗實錄)이 편찬된 후 역대 고려왕의 실록은 속속 편찬되었고, 이들 실록은 고려 왕궁인 수창궁의 사관(史館)에 수장되었다. 고려의 실록 편찬과정은 8인의 사관(史官) 외에 겸관을 두고 기거주(起居注) 등 사고(史藁)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사관(史館)에 수장하고 1부는 집에 보관하였다가 실록을 편찬할 때에 사고를 제출하도록 하여 실록편찬의 토대로 삼았다. 수집된 사고를 토대로 분년편찬한 것이다.

고려에서 실록의 부본을 제작하게 된 것은 고종년간 『명종실록』(明宗實錄)을 편찬한 후 해인사에 수장한 것에서 비롯된다. 아마도 이때 거란군, 왜군, 몽골군의 침입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부본을 제작한 것일지도 모른다. 부본을 제작하고 이들 실록의 완벽한 보존을 위해 관리도 엄중하게 한 바 고려말의 기록에서도 포쇄를 했고 보고서인 목록을 작성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어 몽고군의 침입으로 실록은 강화(江華), 선주 득익사(善州 得益寺), 보주 보문사(甫州 普門寺), 충주 개천사(忠州 開天寺), 죽주 칠광사(竹州 七長寺) 등으로 옮겨진다. 그러나 고려의 실록은 조선 세종년간 『고려사』(高麗史)의 편찬이 완료된 이후 기록에 나타나는 바 없어서 망실된 시기, 원인과 과정을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충주사고에 수장되어 있던 『고려실록』(高麗實錄)이 임진왜란 당시 소실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고려의 실록편찬과 사고관리의 제도는 조선에 계승된다.

조선은 건국초부터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평소에 사초를 만들어 두었다가 국왕이 사망한 후에 실록을 편찬한 바, 태조로부터 철종에 이르기까지 25대왕의 실록이 편찬되었다. 이들 실록은 원래 왕별로 '太祖康獻大王實錄' '世宗莊憲大王實錄' '英宗至行純德英謨毅烈章義弘倫光

仁敦禧體天建極聖功神化大成廣運開泰基永堯明舜哲乾健坤寧翼文宣武熙敬顯孝大王實錄' '正宗文成武烈聖仁莊孝大王實錄'과 같이 종합서명이 없었다. 이를 총칭해서 조선시대에는 단지 실록(實錄)이라고 하였고, 일제시대에는 이조실록(李朝實錄)이라 칭했었다.

현재는 『조선실록』(朝鮮實錄)을 흔히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실록은 처음부터 이와 같은 종합서명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왕에 따라 서명이 길고 다양하기 때문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영인할 때 편의상 『조선왕조실록』으로 총칭한 것이다. 따라서 『조선왕조실록』이라고 칭함은 국사편찬위원회 영인의 영인본을 지칭하는 고유명사이고 『조선실록』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청과 명의 실록은 『명실록』『청실록』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고려의 실록도 『고려실록』이라고 칭하고 있는 실록에 대한 일반적인 통칭으로 볼 때, 조선의 실록도 『조선실록』으로 칭하는 것이 보다 온당하다고 본다.

『조선실록』(朝鮮實錄)은 조선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대외관계, 왕실, 인물 등 여러 방면의 연구에 있어서 필수불가결의 자료이다. 그 내용에는 지금은 망실된 공문서의 전문이 인용된 것도 있고 혹은 중요부분이 전재된 것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상 1차자료는 당해 공문서이겠지만 망실된 이상 2차자료지만 실록의 기사가 대신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실록을 조선시대의 주요한 연구자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지적인 이해의 바탕 위에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조선시대 실록의 간행은 네 단계의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간행의 첫째 단계는 실록편찬을 위한 기본자료인 시정기와 사초를 작성하고 작성된 사료를 관리하는 것인데, 이 업무는 상설기관인 춘추관(春秋館)에서 담당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기록의 보존이 필수적이다. 둘째 단계는 사료를 수집, 정리, 편찬하는 단계이다. 이때 전왕의 치세기간이 짧으면 춘추관에서 직접 실록을 편찬하기도 하지만 치세기간이 길면 임시로 실록편찬만 전담할 실록청(實錄廳)을 두었다. 이 단계에서는 기록의 평가과정을 거치게 마련이다. 셋째 단계는 실록을 인쇄하여 궤에 넣는 단계이다. 이는 역시 임시관청으로 정서등록청(正書謄錄廳), 분판등록청(粉版謄錄廳), 별공작청(別工作廳)을 설치하여 시행하였다. 넷째 단계는 간행된 실록을 춘추관사고와 외사고에 봉안하는 단계이다. 실록간행이 끝나면 가장 먼저 춘추관사고에 봉안하였다. 이 사이 실록의궤청(實錄儀軌廳)을 두고 실록편찬에 소요된 물품, 동원된 인원과 전체 과정을 순서대로 기록한 실록선수의궤(實錄撰修儀軌) 5건과 봉안할 실록의 서목인 실록봉안형지안(實錄奉安形止案) 5건을 필사하였다. 외사고에는 신간의 실록, 의궤와 형지안을 동시에 분장하였다. 이 과정이 끝나야 실록의 간행이 완결되는 것이다. 이후에는 실록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다.

2.2. 관리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봉안된 실록은 각 사고에서 관리하게 된다. 실록은 이용을 위한 서적이 아니라 자손만대에 전승시키기 위한 서적이었다. 그러나 문제해결을 위해 다른 참고서적에서 전거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실록을 참고하였다. 실록은 빈번하게 이용되지는 않지만 잘 관리하여 자손만대에 전할 제도적인 장치는 조선초부터 마련되어 있었다. 춘추관에 봉안된 실록의 관리제도는 고려와는 크게 달라진 게 없었겠지만 외사고의 관리제도에는 변화가 있었다. 고려의 외사고는 주로 사찰에 두었었는데,

조선초에는 충주, 성주, 전주의 읍성 내에 건립된 사고에 봉안하여 수호군을 두고 지방관아에서 관리하게 하였다. 이는 숭유억불의 국시에서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읍성 내에 있었으므로 왜군이 진군하였을 때 그 화를 손쉽게 재빨리 입게 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에는 전주사고본을 토대로 복인하여 5사고에 분장하였던 바 누구든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깊은 산중에 사고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로서 사고의 수호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선조 39년 4월 경외사고수직절목(京外史庫守直節目)을 마련하여 수호하게 하였다. 절목의 내용에 따르면 춘추관사고는 춘추관의 관원이 수직하고 병조에서 수호하였고, 외사고는 참봉이 수직하고 승군이 수호하였다. 예조에서 임명한 참봉은 2명이 교대로 순찰하고 수직하는데, 사각의 외면에서 이상유무를 봉심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당해 수령에게 보고하였다. 수령은 당해 도의 관찰사를 통해 춘추관에 보고하게 된다. 이 보고를 접한 춘추관에서는 사관을 파견하여 사각을 수리하거나 이설하였다. 승군도 사고마다 20명씩 교대로 순찰하고 수호하였는데, 그 명단은 예조에 보고되었다. 외사고를 수호할 승군은 인근의 사찰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정족산사고는 전등사, 오대산사고는 월정사, 태백산사고는 각화사, 적상산사고는 안국사에 소속되어 있었다. 각 사고 수호의 승군책임자는 총섭이었는데 최고책임자는 도총섭으로 강화사고를 담당한 전등사의 주지가 임명되었다. 이는 고려시대에 부본 실록을 해인사에 봉안한 것이나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여러 사찰로 소개하면서 수호했던 전통이 부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춘추관에서는 정기적으로 외방사고에 수장된 실록을 점검하고 왕에게 보고하였으며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봉심하고 점검하였다. 세종 28년에 3년1차의 포쇄를 규정한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사관을 파견하여 포쇄하였다. 이외에도 실록의 봉안, 이안, 환안, 고출, 실록각의 봉심과 수개를 할 때도 포쇄하였다. 포쇄한 후에는 반드시 점검하고 형지안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부정기적인 점검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강화사고가 다른 사고에 비해 3배 정도 많이 시행되었다. 외사고에는 반드시 사관만이 파견되었다. 왜냐하면 사관이 아니면 사고문을 개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록의 봉안과 고출에는 춘추관의 당상 1명과 한림 또는 별겸춘추 1명이 파견되었고, 실록의 포쇄 또는 사각의 수개를 위해서는 한림 또는 별겸춘추 1명만 파견되었다. 사고를 개폐할 때는 항상 관상감 관원을 대동하였다.

춘추관사고나 외방사고를 막론하고 사고를 열 때는 관상감의 관원에게 문을 여는 시각을 택하게 하여 길한 시간에 열었다. 점검절차는 사각 앞에서 사관이 먼저 네 번 절한 후 출입문의 봉인을 확인하였다. 이어 문을 열고 서책궤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였다.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궤를 열어 포쇄하고 끝나면 궤에 다시 넣었다. 이때 미리 준비해온 방충과 방습용의 물품인 초주지, 천궁가루와 창포가루를 교체시켰다. 이 궤를 다시 봉안한 후 사고문을 잠그고 '某年某月某日印封'이란 표시를 하였다. 이때 사고에 수장된 실록을 점검한 목록인 '실록폭 형지만(實錄曝 形止案)'을 작성하여 역시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포쇄할 때에는 형지안 2건을 작성하여, 1건은 당해 사고에 보관하고 1건은 임금이 열람한 후에 춘추관에 수장하였다. 형지안에 기록된 내용은 실질록(實錄秩), 서책질(書冊秩), 의궤질(儀軌秩), 형지안질(形止案秩), 권말(卷末)로 구성되어 있다.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형지안은 선

조 21년도 전주사고의 '실록폭 형지만(實錄曝形止案)'이다. 또 선조 24년과 26년도 형지안도 전래되고 있는데 이는 임진왜란 직전직후의 형지안이다. 이외 임진왜란 이후 8사고의 462책의 형지안이 전래되고 있다.『조선실록』의 서지적인 권수는 1,717권이나 물리적인 책수는 사고마다 다양하다. 그 전래가 확인된 실록은 현재 정족산본 1,187책, 태백산본 848책, 오대산잔본 73책(서울대학 27책, 동경대학 46책), 봉모당잔본 6책, 낙질본 71책(정족산본 32책, 춘추관본 39책), 산엽본 25책(정족산본 14책, 춘추관본 9책, 미상 2책)이다. 국내의 실록은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어 있다. 창경궁의 장서각에 수장되어 있던 적상산본 실록은 현재 평양에 있으므로 확인할 수 없었다. 이 실록은 6·25동란기간에 인민군이 접수하여 가져간 것인데 봉모당잔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완질이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실록의 관리와 수호가 있었으므로 오늘날까지도 무사히 전래될 수 있었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었던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기록물을 주도면밀하게 관리하였고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볼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전주사고본 실록에 대해서는 한층 더 많은 관심을 쏟았던 결과로 숙종 25년에 염랍을 하기에 이르렀다. 염랍된 지장에는 수분의 침투가 쉽지 않으므로 누습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었다. 그러나 간혹 과도하게 염랍되어 지장이 쪼개질 정도로 뻣뻣한 것도 있고 극히 일부에는 곰팡이가 검게 슨 것도 있는데 이를 가려내 별도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단 누습된 지장은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므로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조선시대에는 사관의 직필을 보장하기 위해 사관이 아니면 국왕도 실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사관들이 정확한 사실을 기록하도록 보장하고 직필된 실록을 후대에 전하기 위한 장치였던 것이다. 실록은 당시에는 비장의 서적이었지만 현재는 공개되어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이에 영인되었고 번역되기도 하였다. 또한 번역본은 매체변환도 이루어져 시디롬으로 제작되었고 원문의 시디롬은 제작 중이다. 이와 같이 현행의 언어와 문자로 변환되고, 다양한 매체로 제작되었으므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것이다. 이에 한편으로는 원본을 영구히 보존할 수 있도록 보존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록을 토대로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종래에는 이와 같이 기록을 중시하여 자손만대에 전하기 위해 전담관원을 두고 기록하였다가 평가단계를 거쳐 편찬하고 주도면밀하게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3.공공기관 기록물관리의 현황

현재에도 통치관계 기록으로 대통령비서실 내에 통치사료비서관과 행정관속기사를 두고 대통령의 활동내용을 기록하여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시켜 공화국별로 보존하고 있다. 또한 각 부처 업무의 기록은 관보(官報)에도 수록되고 있다. 그러므로 제도는 다르지만 기록물의 관리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조와는 달리 언론매체도 기록업무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언론매체에는 대통령의 일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도 기록하고 있다.

언론매체에는 한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세계의 동향까지 수록되어 있다. 한

예로 현대사의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으로 정주영 현대그룹명예회장이 소떼를 몰고 판문점을 통과해 이북으로 들어간 사실이나 역사적인 금강산 관광의 길이 열린 것과 관련된 기록은 대통령관계기록과 관련정부기록에도 있겠지만, 또한 각 신문에도 매일매일의 일이 소상하게 수록되고 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가 통일되는데 하나의 중대전기가 될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는 물론 후일의 역사연구에도 아주 중요한 사료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현대에는 통치권자의 기록뿐만 아니라 민간의 기록도 후일의 중요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어 있어서 기록이 완벽하게 보존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요기록이 여러 관련기관에 보존되기도 하지만 의도적이건 아니건 상당수 산실되기도 하였다. 더구나 최고통치권자의 기록이 의도적으로 파기되어 후임자에게 인계되지 않았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접했을 때 오늘의 제도와 관리상태가 전대에 미치지 못함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대통령 통치관계 기록은 박정희대통령문서만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개 파기되거나 멸실된 상태라고 한다. 더구나 금번 대통령이 전임자로부터 인수한 문서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자극되어 기록보존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결국 법제화하기에 이른 것이다.

현재 선진제국에는 국가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국립문서관을 두고 있다. 이러한 국가기록물을 관리하는 기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가의 기록물 중 사료적, 정보적, 증빙적, 행정적 가치가 있으며, 국가의 자산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관리 보존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록물의 수집, 평가, 정리, 보존, 이용까지의 기록물관리 프로그램을 지휘, 감독함으로써 기록관리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증대하고 나아가 기록문화를 향상시켜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이다.

우리 나라에도 종래 행정자치부에 국장급 기관으로 정부기록보존소를 두고 국가기록물을 관장하게 하였으나, 산하기관이나 지방 자치단체에는 기록물을 전담할 기구가 없었다. 정부기록보존소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체계적인 기록물 수집과 보존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국민의 몰이해, 법적인 미비, 행정적인 지원이 미약하여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 그러기에 매우 중요한 대통령의 통치관계기록이 파기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국민의 정부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99년 1월 29일)과 동「시행령」(99년 6월 30일)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의 주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통일된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 특수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특수자료관, 각급 자료관을 설치하여 2000년 1월부터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행정자치부 산하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는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년부터 대통령 통치문서를 비롯하여 직무수행과 관련된 정부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대통령문서도 임기만료 6개월 전부터 수집, 보존하거나 차기 대통령에 인계하도록 규정하였고, 이를 임의로 파기, 훼손, 유출시킨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안전기획부, 육해공군도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자체로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지 아니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

과 협의하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도 있게 되었다. 또한 통일, 외교, 국방, 수사분야 기록물은 특성상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과 협의하여 특수자료관을 운영할 수 있다. 이들 기록물에 대해 특별히 다른 법률에 저촉되어 공개가 제한된 경우가 아니면 열람을 허용하고, 30년이 경과한 비공개 기록은 전문보존기관의 장이 공개여부를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공공기관의 기록물뿐만 아니라 민간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가운데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은 국가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기록물관리기관에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그 자격 및 배치인원에 대해서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로서 2000년부터 행정, 사법, 입법부 등 국가기관과 광역자치단체에 중요문서의 장기적인 보존관리를 담당하는 기구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각급 공공기관에는 기록물 보관 부서를 설치하는 등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기록물관리체계를 갖출 법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입법, 행정, 사법의 정부기관은 물론 일부 대학과 기업 등에서도 각각의 기록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부서를 설치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등에서는 기록물관리기관을 도서관으로 규정하여 도서관 내에 대학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집중적으로 수집, 정리, 보존, 이용하게 하였다.

그러나 행정부에는 정부기록보존소와 동급의 새로운 기관은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동일 기능을 지닌 기관을 중복되게 설치해서 이권을 위한 분쟁이 생기게 하거나 관할을 서로 떠넘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보다는 이미 설치된 정부기록보존소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 관할 하 하부조직은 보강해야 할 것이다. 또 하부기관마다의 위상을 정해주고 지휘감독을 일원화해서 효율적인 기구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국가 기록물 관리의 표준화와 전문화를 위해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록물 관련 법률과 동 시행령이 제정되었으므로 각 지방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면 앞으로 이를 담당할 전문요원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인원을 양성하기 위해 이미 학생을 모집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도 있다. 학부에는 목포대학과 공주대학 등에 설치되어 있다. 대학원과정에는 국립목포대학 대학원에서 사학과와 행정학과의 협동과정으로 기록관리학 과정을 지난 3월에 개강하였다. 또한 명지대학교에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을 부설하여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1년과정을 지난 5월에 개강하였다. 이외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충남대학교. 한남대학교 등에서도 대학원 과정에 협동과정으로 기록관리학과의 설치를 서두르고 있으며, 부산대학교에서는 문헌정보학과와 사학과의 협동과정으로 설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4. 오늘의 과제

앞으로 기록관리학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이 속속 설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능력있는 인원을 배출하되 수요를 예측하여 적정 인원을 배출할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선결문

제는 먼저 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할 인원의 직무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직무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할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교과과정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록물관리사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을 설치함에 기록물 관리에 관한 학자를 양성할 것인가 아니면 실무전문가를 양성할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무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의 교과과정은 지난 7월 5일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에서 개최된 기록보존협회세미나에서 김태수 교수가 제시한 교과과정이 비교적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효만료된 고문서를 다룰 어학능력과 서체감별 능력을 배양할 교과는 보완될 필요가 있다.

기록관리학과가 대학원과정에 설치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는 사서직의 위상문제이다. 지금까지 사서양성교육기관은 우리 나라는 대개 4년제 대학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사서양성 교육기관이 대학에 설치되기 시작한 것은 50년대 말기와 60년대 초기였다. 당시 우리 나라의 실정으로 사서양성을 대학원과정에 개설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심지어 60년대 말기에도 대학원과정은 개점휴업상태였으나 80년대에 들어서 상황은 많이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학부과정에 설치되었다. 결과로 이들 사서들이 주제전문사서로 활동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사서직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현시점에서 기록물 관리를 담당할 기록물관리사의 양성은 대학원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그렇게 되면 동일한 업무를 다루는 사서와 기록물관리사의 사회적 지위나 위상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나게 된다. 여기서 기록물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아 기록물은 기록된 모든 매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에서 다루는 매체도 역시 기록물이다. 종래에는 그 기록물의 중심이 도서였으므로 도서라고 인식했으나 사회환경이 변했으므로 현재는 단순하게 지제도서(紙製圖書)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다루는 매체에 지제도서 외에 문서, 비도서자료, 전자매체 등도 다루어 왔기 때문에 교과과정에 '비도서자료' '정부간행물관리론' '문서관리론'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은 사회적인 대우나 지위에 있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현상태로는 조만간 위상에 있어 차이가 나게 될 것이다.

아직은「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시행령」만 제정되어 있으므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대한 자격과 자격증 취득에 관한 법적인 뒷받침이 없다. 그러나 추후 대통령령으로 전문요원에 관한 시행기준이 마련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서나 기록물관리사 업무의 성격상 대학과정보다는 대학원과정을 이수해야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기록물관리과정을 설치함에 있어 사서직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학원과정에 설치한다면 동일 업무를 담당하는 사서와 기록관리자의 사회적인 위상에 차별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 문제를 예견하고 이에 대해 미리 대책을 세워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현재 우리 문헌정보학계의 현안이 사서자격증 부여에 대한 시행령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 직면해 있다. 이 규정을 제정함에 이런 요소도 감안해서 마련해야 우리는 후진들로부터 비난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